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35
----------	-------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의자 : 이종성 · 박대수 · 김성원

백종현 · 성일종 · 조명희

전봉민 · 박덕흠 · 임이자

박성민 · 최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인 쉼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 · 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마다 천차만별임.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인권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 <u><신 설></u></p>	<p>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u>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상담, 지역 사회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의 인권옹호 ·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p>
<p>3. ~ 5. (생 략) ② (생 략)</p>	<p>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